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40호의3서식] <개정 2025. 4. 23.>

사유지 매수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30일
요청인	성 명(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 소	전화번호

사업의 명칭	
사업의 위치	
사업의 종류	
사업지 면적	○ 전체면적 ㎡ – 국유지·공유지 면적 ㎡ – 사유지 면적 ㎡ (취득면적 ㎡, 잔여면적 ㎡)
토지의 활용계획	
토지매입 시기	. . . ~ . . .

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성사업에 필요한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
특별자치도지사· 귀하
시장·군수·구청장

첨부서류	1. 사업계획서 1부 2.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3.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지의 위치 및 지번 1부 4. 매수 요청 사유(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통한 사유지의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포함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사업시행자 확인사항	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(임야)대장	

처리절차

요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정	→	통 보
요청인				처 리 기 관 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)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